

[별표 3]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4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10점 이상 30점 이하
	기능성	기능성 평가 결과 (요구 기능 구현성, 보안성, 이식성 등)	20점 이상 40점 이하
	사용성	자체 사용성 및 활용 적합성 조사 결과 (유지관리성, 업데이트 용이성 등)	10점 이상 40점 이하
	신인도 (-1.25~+1.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임금채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의 질	+0.5점
선택 평가항목 (60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7.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7.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7.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7.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7.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유지관리	유지관리 상품 및 임치 등록 여부	7.5점 이하
	혁신·우수성	기술인증 및 특허	7.5점 이하
	국산SW우대	국산 소프트웨어 여부	7.5점 이하

1.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2.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신인도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기준 구성 시 기본 평가항목은 신인도를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선택 평가항목은 항목별로 평가 반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4. 신인도 평가 결과 총 평점은 각 지표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 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신인도를 포함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취득점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5. 각 평가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격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frac{\text{제안율}}{\text{평균제안율}}$ - $\frac{95}{100}$)}

가)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42조의4 제3항에 따라 제안율이 100분의 100(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된 비율)인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율 합계 및 평균제안율을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나)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나. 기능성

- 1) 기능성은 관련 법령·규정 및 조례 등에 따라 수요기관의 자체적인 선정·

평가위원회,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 2) 상용소프트웨어의 기능성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 평가요소 및 그에 대한 배점한도를 정하여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시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능성	기능구현 완전성/정확성	수요기관 요구 기능 구현 및 정상 동작 여부
	상호 운용성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
보안성	정보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
이식성	운용 환경 적합성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 여부
	하위 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 각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상대평가 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등급별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기능성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용성

- 1) 사용성은 관련 법령·규정 및 조례 등에 따라 수요기관의 자체적인 선정·평가위원회,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 2) 수요기관의 장은 아래의 평가부문, 평가항목 등을 참고하여 사용성 평가기준, 평가요소를 제안요청 및 제안공고 시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사용성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별 사용성 평가의 최저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유지관리성	환경설정 변경가능성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
업데이트 용이성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

5) 각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상대평가 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등급별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라. 신인도

1)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누적점수 10점이상~20점미만	-0.1
	누적점수 20점이상	-0.25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한 결과 누적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을 적용한다.

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10
	가. 2억원 이상의 뇌물	5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3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2
담합	가.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10
	나. 담합에 참여한 자	5
허위서류	가. 위조, 변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5
	나. 위조, 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3
	다.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또는 부정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3
안전사고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5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3
	다.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8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5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3

※ [주]

상기 불공정행위로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과 쇼핑몰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 또는 조치 종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2) 임금체불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3)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단,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4) 고용우수기업

기업구분	평가기준		가점
	전체고용증가율	청년고용증가율	
대기업	3% 이상	3% 이상	+1점
중기업	4% 이상	3% 이상	+1점
소기업	5% 이상	3% 이상	+1점

가)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 (1)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규모 정보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대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2)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비영리법인 등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3)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전체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청년 고용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이 0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 전체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점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실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등)로 평가한다.

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비교하는 각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수가 포함되는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신설, 합병, 분할 등에 의한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기업(분할과 관련된 기업 모두 포함)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해당월 말일 기준 1개월치 자료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아) 전체고용증가율 및 청년고용증가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일자리의 질

가) 각 인증별 내용 및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가 각 인증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인도 가점 +0.5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인증구분	인증내용	인증 유효기간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또는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디지털서비스물에 해당 인증을 등록한 기업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부문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디지털서비스물에 해당 사실을 등록한 기업 (단, 1건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 승인통지서'에 1건의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인정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계획 승인통지서에 따른 신규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서'는 허용)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1년간

마. 적기납품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납기지체 여부	납기지체율	$\text{평점(점)} = \text{배점} \times \left(1 - \frac{\text{납기지체율}(\%)}{4} \right)$

- 1)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서비스물 및 쇼핑물을 통해 납품요구를 받아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납품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text{납기지체율}(\%) = \frac{\text{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text{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times 100$$

- 2) 평가 대상 납품요구 건은 납품이행 완료시점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한다.
- 3)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산되어 디지털서비스물 시스템을 통해 제

공된다.

- 4) 납기지체율이 2(%)을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5) 평가 대상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가 없는 경우 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바. 사후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 1)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계약상대자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사. 납품실적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해당제품 납품실적	납품금액	평 점(점)=배점×($\frac{\text{납품금액}}{\text{구매예정금액}}$)
	납품수량	평 점(점)=배점×($\frac{\text{납품수량}}{\text{구매예정수량}}$)

- 1) 납품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 2)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3)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 4)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 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평점} = \Sigma \left(\frac{\text{세부품명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세부품명별 평점} \right)$$

아. 경영상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배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율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2)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 이어야 한다.
- 3) 계약상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자. 지역업체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지역업체여부	지역업체 여부	본사가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본사가 해당지역에 없음 : 배점 × 0.2

- 1) 지역업체 여부는 그 본점 내지 본사가 납품지 소재지(광역자치단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상 사업장소재지를 본사 소재지로 판단한다.
- 2)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디지털서비스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3)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 제1호가목의 ‘물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호가목의 ‘물품·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차. 약자지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u>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u> <u>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u> <u>자활기업</u>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배점 × 0.7
	여성기업	배점 × 0.6
	해당없음	배점 × 0.4

- 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디지털서비스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 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디지털서비스물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카. 수출기업 지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수출 중소기업, G-PASS기업(C등급 제외)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해당없음	배점 × 0.4

- 1) 수출 중소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10만 USD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하되, 계약상대자가 수출 증빙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원

에 한함), 중소기업 확인서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2) G-PASS 기업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디지털서비스물에 등록되어 있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C등급 기업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3) 수출기업 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 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타. 유지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안정적인 유지관리 지원	수요기관 요구 유지관리상품 계약	배점 × 1
	유지관리 상품 계약	배점 × 0.8
	해당 SW버전 기술자료 임치	배점 × 1.0
	해당없음	배점 × 0.6

* 유지관리상품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유지관리상품 계약여부와 임치 등록여부는 합산하여 평가하되 유지관리 항목의 총 배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유지관리상품

가) 수요기관에서는 유지관리상품 계약여부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의 유지관리 요율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등급을 결정하여 제안요청 및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수요기관 요구 유지관리 등급이 옵션상품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배점 ×1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며, 수요기관 요구 등급 이외의 등급이 계약되어 있는 경우 배점 ×0.8에 해당하는 배점을 부여한다.

* 유지관리 상품을 평가하여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도, 실제 사용 시점의 수요기관 사업 및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유지관리 서비스 기준의 변경 또는 유지관리 요율의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는 당초 제안공고 시점의 유지관리 계획 등에 따라 유지관리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상품은 메이저업그레이드, 커스터마이징 등은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며, 메이저 업그레이드, 커스터마이징, 추가 유지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품과 별도로 계약 등을 통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여부 평가는 「저작권법」, 「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다자간 임치계약을 체결한 임치증서 등을 제출한 경우 배점×1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 임치여부에 대한 배점을 부여받고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후 14일 이내에 다자간 임치계약의 사용권자로 해당 수요기관을 등록 하고, 관련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치 및 갱신에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유지관리상품 및 임치 등록여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파. 혁신·우수성

구분	인증 종류	평점
혁신기술	NEP, NET,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SP인증(3등급), CMMI인증(4~5등급)	배점 × 1
일반기술	SP인증(2등급), CMMI인증(3등급), 특허* * 특허제품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등록이 확인되고(통상실시권은 불인정), 특허기술과 제품의 연관성을 검토하되 필요 시 제품에 특허가 반영되었다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특허기술적용확인서 또는 변리사의 감정서가 있을 경우 인정	배점 × 0.8
기술인증 해당없음		배점 × 0.6

가) 혁신·우수성 평가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품목별로 인증 구분에 관계 없이 점수가 높은 1개의 인증에 대해서만 배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디지털서비스물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다) 다만, SP인증 및 CMMI인증은 품목기준이 아닌 해당 제품의 제조사를 기준으로 획득 여부 및 등급을 판단하며, 제조사의 인증이 다수인 경우에는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SP인증 및 CMMI인증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제안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가점을 적용하며 적용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가점} = \sum \left(\frac{\text{품목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품목별 가점} \right)$$

하. 국산 소프트웨어 우대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국산 소프트웨어	국산소프트웨어	배점 × 1
	해당없음	배점 × 0.8

1) 국산 소프트웨어 우대는 WTO 정부조달협정 비양허기관이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다.

2) 국산 소프트웨어 여부는 제안자가 제출한 인증서, 프로그램등록부 등 증명자료를 통하여 판단한다.

[별첨] 유지관리 효율 기준

〈지원서비스별 표준점수 환산표〉

지원분야	서비스가중치		지원수준		
			A	B	C
	항목	가중치	100%	80%	60%
기술지원 (60%)	장애복구 (장애발생후복구시간)	25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12시간이내
			25	20	15
	정기점검 (장애사전예방차원)	25	월1회 방문	분기1회 방문	원격지원
			25	20	15
	일상지원 (장애접수,질의응답)	5	콜센터 운영	사이트 운영	전화,e-mail
			5	4	3
	이전설치지원	5	3회	2회	1회
			5	4	3
소 계		60	48	36	
제품지원 (30%)	업데이트 및 패치	15	방문지원	원격지원	사이트운영
			15	12	9
	마이너 업그레이드	15	방문지원	원격지원	사이트운영
			15	12	9
소 계		30	24	18	
교육지원 (10%)	운영자 교육	5	교육센터 운영	방문 2회	방문 1회
			5	4	3
	사용자 교육	5	교육센터 운영	방문 2회	방문 1회
			5	4	3
소 계		10	8	6	
합계			100	80	60

- 수요기관의 장은 유지관리서비스 지원분야별로 요구하는 지원수준을 선택하여 유지관리 요구 서비스 점수를 산출한다.

〈산출 점수별 유지관리 등급 및 효율 적용 기준〉

유지관리등급	표준점수(범위)	산정된 점수(예시)	적용 유지관리효율
S	96 ~100	100(최고값)	17%
A	90 ~95	92	16%
B	80 ~89	88	15%
C	70 ~79	79	14%
D	70 미만	60(최저값)	13%

- 위 기준에 따라 산출 된 점수를 표준점수 구간에 해당하는 유지관리 등급을 부여한다.